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2월 1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윤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- 상위법령의 제명 및 시행령 조항 변경(안 제1조).
 - 위원회 위원 수 확대(안 제2조).
 - 위촉직 위원의 성별 관련 규정 추가(안 제2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변경(2014.06.03.)되고 시행령이 2023. 6. 9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 및 시행령 조항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맞춰 위원회 인원 및 성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